

종합금융화 시대에 대응한

보험제도 개편방안

일시 : 2006년 9월 7일(목) 15:00

장소 :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

보험개발원
보험연구소

I . 추진배경

II . 기본방향

III. 보험사의 업무영역 조정

IV. 보험산업의 자율성 확대

V . 보험제도 선진화

VI.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

VII. 기타 중장기 검토과제

- 최근 금융업권간 겸영 확대, 복합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금융 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추세
- 은행은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 개편 주도
 - 『자본시장 통합법』 제정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기능별 통합도 가속화 될 전망
- 금융겸업화의 진전 과정에서 금융업권간 겸업이 확대되어 동종·이종 금융업종간 경쟁 격화
- 금융의 겸업화·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필요

-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
 - 다른 금융업 및 부수업무의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화·종합화를 유도
 -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·효율성 제고 및 관련 절차·기준의 투명성을 제고
 - 보험사기 방지,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보험제도 선진화

1. 다른 금융업무의 취급 확대

2. 부수업무등의 확대

기본방향

- ◇ 보험사의 종합금융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겸영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
- ◇ 보험업의 수익원 확대 및 자산관리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

(1)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허용

- 노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노후보장 및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산관리(Asset Management)서비스 제공 기능 필요
- 보험사의 경우 이미 대규모 자산을 운용·관리하고 있어 자산운용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해외사례(미국 뉴욕주)를 감안

1. 다른 금융업무의 취급 확대

(2) 지급결제 업무 허용 중장기적 검토

- 고객 편의를 위한 보험사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급결제관련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
- 금융기능(은행.증권.보험)의 분리 원칙 하에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
 -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서 증권업계에 허용하는 지급결제업무와의 형평성을 고려
 -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 중장기적 검토

(3) 예·적금 판매 허용 검토

- 현재 시행중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는 방식으로 보험사에 은행 상품 판매를 허용
 - 다만, 보험사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 검토

1. 다른 금융업무의 취급 확대

(4)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대상 확대

-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는 자산을 직접 운용 또는 처분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관리 업무로서 업무수행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으므로,
- 관리업무의 대상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

2. 부수업무등의 확대

(1) 부동산 운용업무의 명확화

➤ 현황

- 보험회사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미사용 공간에 대한 임대와 투자사업용 부동산(사회복지사업, 도시재개발사업 등 공공성 사업 등을 위한 부동산)을 활용하고 있음

➤ 취급방법의 명확화

<제1안> 부수업무화 하는 방안

- 소유부동산의 운용업무를 부수업무로 규정
- 다만, 주택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허용 범위의 제한, 구분계리 설치 등 규제 신설

<제2안> 자산운용업무화 하는 방안

- 소유부동산의 운용업무를 자산운용업무로 명확히 규정
- 다만, 주택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사업의 부동산 소유비율 한도를 신설

(2)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 소유 허용

-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PEF가 제외되어 있어 PEF를 이용한 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어,
- 보험사가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종에 PEF 포함

(3) 부수업무의 포괄적 영위 허용

- 은행업 및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의 금융투자업의 부수업무 허용 수준을 감안하여 보험사에도 포괄적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
- 부수업무를 “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인가받은 보험업에 부수되는 업무”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,
- 부수업무의 허용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
 - 다만,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계약자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부여

1.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

2.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

기본방향

- ◇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체계 전환 및 확인·검증 절차의 완화 또는 간소화를 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
- ◇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심사 요건, 심사기간 및 조치기간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 제고
- ◇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 부여

1.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

(1) 보험상품개발 규제체제의 전환

- 보험상품 개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고
- 신고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상품 개발의 투명성·자율성을 제고
- 현행 제출상품 중 규제 필요성이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개발을 완전 자유화(제출불요 상품)

현 행	개 선
○ 신고 또는 제출 - 신고 원칙 - 다만, 금감위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출로서 신고에 같음	○ 신고, 제출 또는 제출불요 - 제출 원칙 - 다만, 예외적으로 신고 - 규제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완전 자유화

1.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

(2) 보험상품 확인·검증절차 간소화

-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신고·제출하는 경우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의 요율확인*절차를 자율적으로 선택

* 요율산출기관의 요율확인: 보험사가 산출한 요율에 대한 확인의견서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업무로서 보험상품의 최종 신고수리 여부의 결정, 변경권고 조치 등을 하는 금감원의 상품심사기능과는 다르며 현재도 수행중임.

현 행	개 선
○ 신고·제출상품의 요율확인절차 - 선임계리사* 및 요율산출기관의 확인	○ 신고·제출상품의 요율확인절차 -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의 확인

*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확인업무는 폐지되지만 그 외의 보험계리업무는 유지

- 상품개발과정의 이중규제 또는 절차상 중복이라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 중심으로 사전 심사를 간소화

(3) 사후조치의 투명성 제고

- 변경권고 및 변경·사용정지명령 등 사후조치 요건인 “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”의 의미를 구체화
- 상품심사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사의 예측가능성 제고
 - 신고상품의 경우 일정기간(예:15일) 이내에 변경권고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

현 행	개 선
○ (신 설)	○ 신고수리의제 기간 - 신고후 15일

(4)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

- 보험사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에 대응하여 위반시 제재는 강화함으로써 보험사 및 담당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

현 행	개 선
○ 제출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보험사 제재 - 연3회 이상 위반시, 1천만원 과태료 부과	○ 제출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보험사 제재 - 위반횟수 제한 폐지 (1회당 1천만원 과태료 부과)
○ (신 설)	○ 부당상품개발 및 판매에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 - 해당 보험사·임직원에 대한 제재 신설

기본방향

◇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운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
보험사의 자산운용 경쟁력을 제고

(1) 외화자산 운용비율 규제 완화

-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외화표시 보험상품의 책임준비금 상당의 자산은 외화자산 운용비율 산정에서는 제외함으로써 외화자산의 운용규모를 확대

(2) 기타 외화자산관련 규제 완화

-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(신종외화증권은 기초자산)에 대해서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인정
- 외화대출을 허용하고, 외화대출 취급한도도 확대
- 업무용(업무시설 또는 투자사업용) 해외부동산 취급을 허용

2.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

(3) 파생금융거래 관련 규제 완화

- 보험사 자산운용의 대상인 파생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(기업회계기준상 정의 준용)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파생금융거래를 허용
 - 다만, 보험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파생금융거래를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금지
- 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 취급이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, 현행 보험사의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총자산의 1%로 확대
- 현행 규정상 한도적용 예외로 인정받는 파생금융거래 중 실질 헤지거래로 볼 수 없는 항목*은 한도적용 대상에 포함

* 주식연계증권, ALM위험회피 목적의 이자율 관련 파생금융거래 등

1. 보험사기 조사 제도 확립

2. 손해사정사 및 보험설계사 제도 개선

3. 보험정보의 이용·보호

기본방향

- ◇ 보험사기 증가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보험사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사권을 강화
- ◇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과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자 보고의무 등을 신설

1. 보험사기 조사 제도 확립

(1) 보험사기 조사권 명확화 및 보험사기 유형 신설

- 금감위(원)의 조사권에 보험사기 조사권을 추가하고, 보험사기 조사권의 범위에 보험사기 유형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

(2)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

- 금감위(원)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가입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공공기관은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
- 보험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금감위(원)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
 - 또한,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일관성 확보

2. 손해사정사 및 보험설계사 제도 개선

기본방향

- ◇ 보험상품의 종합화에 따라 손해사정사 자격의 통합을 추진
- ◇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구분 및 영업범위 제한을 없애고 통합하는 방안 검토

(1)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

<제1안> 단일손해사정사로 통합하는 방안

- 보험상품의 복합화 추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의 One-Stop 처리를 위하여 손해사정사 업무구분을 폐지하고, 단일 손해사정사로 통합

<제2안> 인적 사고 및 물적 사고담당 손해사정사로 구분하는 방안

- 2가지의 손해사정 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통합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

2. 손해사정사 및 보험설계사 제도 개선

➤ 통합에 따른 대책

- 손해사정사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
- 손해사정사간의 이해상충 및 시험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(예:3년) 유예후 시행

(2) 보험설계사 자격 통합

- 보험설계사의 생보·손보·제3보험 구분은 오히려 보험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격의 통합을 검토

(3) 보험설계사 전속제 제도 개선

- 현행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전속제도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
 - 교차모집 시행,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취급하는 보험 및 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전속 여부를 법률로 규제하는 현행 보험설계사 전속제도의 개선을 검토
- ⇒ 교차모집 시행시기, 보험모집방법의 트렌드 변화, 보험시장에서 거래질서 확립추이,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속제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

기본방향

◇ 보험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기본으로 하고, 보험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정보 보호장치를 보험업법에 마련

- 보험정보 유통시 정보주체의 정보활용동의를 의무화하되, 보험업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용*을 허용

* 미국, 영국, 일본 등에서도 예외적용을 허용하고 있음

-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

- 보험계약 체결당시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:
자동차보험의 특정되지 않은 운전자, 단체보험의 특정되지 않은 피보험자, 배상책임보험 제3의 피해자 등
- 보험계약자가 정보주체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:
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등

1. 보험소비자 구분 및 설명의무 강화

2. 비교공시 제도 개선

1. 보험소비자 구분 및 설명의무 강화

기본방향

- ◇ 보험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의 권유 및 제공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를 지식과 경험에 따라 구분하고, 설명의무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

(1) 보험소비자 구분 신설

- 보험소비자를 금융 및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등을 기준으로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

	현 행	개 선
○ 보험소비자 구분	- 구분 없음	- 일반소비자 및 전문소비자로 구분

1. 보험소비자 구분 및 설명의무 강화

(2) 모집관련 업무행위 규제

-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확충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완화
 -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,
 -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(상법상 약관설명 의무는 제외)를 완화하고, 위반시 손해배상책임도 완화

	현 행	개 선
○ 일반소비자	- 약관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- 위반시 보험사 배상책임 부담	- 약관 등 설명 및 확인의무 - 위반시 보험사 배상책임 부담
○ 전문소비자	- 일반소비자와 동일	- 설명의무 완화 - 배상책임 완화

- 안내자료 및 청약서상 기재사항 구체화
 - 상품특성 또는 판매채널별로 안내자료 및 청약서상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정보제공의 범위를 차별화

기본방향

- ◇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간 실질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비교 공시제도로 개선
 - 미국(캘리포니아 주)의 경우 자동차보험, 주택종합보험, 장기간병보험 등 일부 개인성 보험종목에 대하여 가격비교정보를 인터넷 제공
- 개별 소비자의 가입 조건별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필요에 맞춘 비교공시 기법 개발
- 최근 자료가 공시될 수 있도록 보험료 조정주기 등을 감안하여 보험상품 별로 의무적인 비교공시 갱신주기를 설정

	현 행	개 선
○ 공시방법	- 보험사별 공시	- 보험사별 비교표에 의한 비교 공시
○ 갱신주기	- (신설)	- 상품별 보험료 조정주기를 감안한 갱신주기 설정

1. 보험업 경영 확대의 문제

1. 보험업 경영 확대의 문제

- 고객 중심 금융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손보 경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
 - 다만,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생손보 경영에 따른 리스크방지체계가 완전하지 못하고,
 - 보험시장 내에서도 논의를 수용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임
- ⇒ 따라서, 향후 생손보 경영의 제도적 여건과 시장수요 성숙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추진할 과제임